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2017년 5월 구미시산림문화관 개관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인 산동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산림복합체험단지 등 주변시설을 통합하는 「구미에코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체험, 학습 및 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미에코랜드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1조 ~ 제3조)

나. 개관 및 휴관일, 시설의 사용시간(안 제4조, 제5조)

다. 입장료, 시설이용료, 이용료 등 감면(안 제6조 ~ 제8조)

라. 시설의 예약 및 시설이용료 반환(안 제9조, 제10조)

마. 시설사용의 제한(안 제11조)

바. 위탁운영(안 제15조)

사. 사업지원 등(안 제1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체험학습 및 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미에코랜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구미에코랜드 내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미에코랜드”란 산동면 인덕리 산5-1번지 일원에 조성한 구미시 산림문화관(이하 “산림문화관”이라 한다), 모노레일, 산동참생태숲, 자생식물단지, 산림복합체험단지, 어린이테마교과숲, 문수산림욕장 등의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수입금”이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이용료로 징수한 현금, 신용카드, 무통장으로 입금한 금액 및 인터넷·폰뱅킹으로 입금한 금액 등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일) ① 구미에코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

하고 연중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3. 모노레일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미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시간)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설별 이용시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등) 구미에코랜드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등) ①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용료 및 체험활동비(이하 “시설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재료비 등의 실비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미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이용료 등을 별표 4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약) ① 모노레일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이하 모노레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하려는 달의 전달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모노레일 등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로부터 24시간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노레일 등을 구미시민이 우선 예약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우선 예약은 예약개시 당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구미시민을 우선하여 접수하고, 9시 이후부터는 다른 지역 주민과 구분 없이 접수하는 방식으로 한다.

⑤ 모노레일 등 이용권의 티켓 현장판매는 구미시에서 전담하되 인터넷(모바일 포함) 예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예매 위탁 수수료는 이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모노레일 등 시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가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세입조치) 모노레일 등 시설운영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4조(수입금 입금) 시설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추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6조(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등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의 개최 지원
2. 백일장, 전시회, 숲해설 경진대회 및 숲길 걷기대회 등 지원
3. 그 밖에 산림문화휴양시설의 이용증진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구미에코랜드 시설 현황(제2조 관련)

구분	위치	층별	시 설 명	주요구조	면 적	비 고
산림 문화관	산동면 인덕 1길 240	옥외	다목적잔디광장, 물빛정원, 염료식물원,주차장	방문객 쉼터	27,000m ²	
		지하	기계실, 수장고	철 근 콘크리트	3,856m ²	
		지상 1층	산림생태 전시/체험장, 영상관, 카페테리아, 관리사무실	“	“	
		지상 2 층	산림생태 전시/체험장 녹색체험교실	“	“	
		지상 3 층	모노레일 탑승 대기실	“	“	
모노 레일	“		생태탐방 모노레일	모노레일 및 정거장		모노레일(1.8km), 정거장(3개소), 차량(8인승 6대)
산동참 생태숲	“		산동참생태숲	목공예체험장, 숲속쉼터 등	100,000m ²	관리사무소(1동), 숲속 교실(1동), 관찰원(1동), 목공예체험장(1동) 등
자생 식물 단지	“		자생식물단지	자생식물 관찰장	80,000m ²	야생화단지(1동), 탐방로, 테마원(1동), 숲 속교실(1동), 습지관찰원(1동), 간이온실(1 동) 등
산림 복합 체험 단지	“		산림복합체험단지	산채체험장, 연구시험장	400,000m ²	체험활동·소득생산지구(31ha), 연구시험 지구(9ha), 육묘장(1동), 퇴비장(1동), 탐방 로 (5.7km), 관수시설
어린이 테마 교과숲	“		어린이테마교과숲	교과별 수목식재, 숲속교실, 숲속도서 관 등	12,000m ²	
문수 산림욕 장	“		문수산림욕장	등산로, 편의시설	100ha	전망대(인덕정),목교, 주차장, 등산로 7.8km 운동시설, 평의자 등

구미에코랜드 이용시간(제5조 관련)

□ 산림문화관, 모노레일 이용시간

구 분	이용시간	비 고
산림문화관 관람시간	· 09:00~18:00 (17:30분 입장마감)	
생태탐방 모노레일	· 동절기 : 09:00~16:00 · 하절기 : 09:00~17:00	※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운영 (기상악화, 결빙 등)

※ 동절기 : 11월~2월, 하절기 : 3월~10월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수강료) 기준(제7조 관련)

□ 생태탐방 모노레일 이용료

구 분	기 준	개 인	단 체 (20인 이상)	비 고
어른(19세이상 64세이하)	1회	6,000	5,000원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 어린이(3세 이상~18세 이하)	1회	4,000	3,000원	※3세 미만 무료

□ 체험활동비(수강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어르신 (65세 이상) 청소년, 어린이 (3세 이상~18세 이하)	어른 (19세 이상 64세 이하)	
녹색체험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1명/1개월	15,000원 ~ 40,000원	20,000원 ~ 60,000원	○ 프로그램 이용료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시간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1명/1시간 이하	2,000원 ~ 5,000원	3,000원 ~ 8,000원	

※ 재료비는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체험활동비 감면(제8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비 고
생태탐방 모노레일 이 용 료	- 구미시민	50%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60%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60%	
	- 장애인	60%	
	- 국가보훈대상자	60%	
	- 홍보행사 등의 수상자(당첨자)	100%	※ 무료쿠폰지급 - 1회 무료/3회 수상
체험활동비 (수강료)	- 구미시민	50%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100%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100%	
	- 장애인	100%	
	- 국가보훈대상자	100%	

※ 비 고

-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되지 않으며 중복될 경우 할인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 사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감면인 경우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구미시민 다자녀 가정 감면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발급 6개월 미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미시민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제26조에 따른 수급자 중 구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 구미시 다자녀 가정이란 주민등록상 주소가 구미시로 되어 있고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장애인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을 따른다.
-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를 말한다.
- 수강료의 면제는 수강료 감면 대상자가 동일 기간에 개설되는 과목 중 원하는 하나의 수강 과목에 한정한다.

구미에코랜드 시설이용료 등 반환기준(제10조 관련)

1. 시설이용료(모노레일) 반환기준

구분	해지유형	처리기준
이용자의 귀책사유	□ 생태탐방 모노레일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티켓금액의 100% 환불)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티켓금액의 90% 환불)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티켓금액의 70% 환불)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티켓금액의 50% 환불)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티켓금액의 20% 환불)
	•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또는 연락없이 불참	• 총요금의 100% 공제 (환불불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사유		• 계약금 환급 (티켓금액의 100% 환불)
시설운영자 귀책사유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티켓금액의 100% 환불)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80% 배상
※ 비고 1. 사용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사용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2. 시설운영자가 당일 탑승전까지 이용자에게 모노레일 이용제한을 사전통보 하였을 경우 배상금은 제외한다.		

2. 체험활동비(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모집정원 미달 등 구미에코랜드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강의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1.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1일 체험활동비는 강의개시 이후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이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2017년 상반기 구미에코랜드 내 산림문화관 개관 예정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에코랜드 운영비 산정, 모노레일 탑승료 등 기본시설 사용료를 근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및 평생교육원의 사용료와 세입·세출 등을 기초로 함

□ 생태탐방 모노레일 이용료

구 분	기 준	이 용 료(개인)		이 용 료(단체)		비 고
		관내거주	관외거주	관내거주	관외거주	
모노레일	어른 (19세이상 64세이하)	3,000원	6,000원	2,500원	5,000원	
	어르신(65세이상) 청소년, 어린이(3세이상 18세이하)	2,000원	4,000원	1,500원	3,000원	

□ 체험활동비(수강료)

구분	기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3세~18세) 어르신(65세이상)	어른 (19세~64세)	
녹색체험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	1명/1개월	15,000원 ~ 40,000원	20,000원 ~ 60,000원	관외거주
	1명/1시간 이하	2,000원 ~ 5,000원	3,000원 ~ 8,000원	
	1명/1개월	7,500원 ~ 20,000원	10,000원 ~ 30,000원	관내거주
	1명/1시간 이하	1,000원 ~ 2,500원	1,500원 ~ 4,000원	

- 운영비는 구미시예산 단가를 적용하며, 최근 5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1.9%)을 매년 적용한다.
-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모노레일 이용료	185,594	278,393	283,682	289,071	294,563	1,331,303
	○ 체험활동비	24,240	36,360	37,050	37,753	38,470	173,873
	소계(a)	209,834	314,753	320,732	326,824	333,033	1,505,176
세출	○ 에코랜드 운영비	868,003	1,006,863	1,025,990	1,045,462	1,065,343	5,011,661
	소계(b)	868,003	1,006,863	1,025,990	1,045,462	1,065,343	5,011,661
□ 총 비용(a-b)		-658,169	-692,110	-705,258	-718,638	-732,310	-3,506,48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868,003	1,006,863	1,025,990	1,045,462	1,065,343	5,011,661
민 간							
기 타							
합 계		868,003	1,006,863	1,025,990	1,045,462	1,065,343	5,011,661

5. 부대의견 : 세입(모노레일 탑승료) 및 세출(에코랜드 운영비)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산림과 류한석
연락처	054-480-588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모노레일 및 체험활동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모노레일	관 내 거 주	79,540	119,311	121,578	123,888	126,242
	관 외 거 주	106,054	159,082	162,104	165,183	168,321
	소 계	185,594	278,393	283,682	289,071	294,563
체험활동비	관 내 거 주	10,388	15,583	15,879	16,180	16,487
	관 외 거 주	13,852	20,777	21,171	21,573	21,983
	소 계	24,240	36,360	37,050	37,753	38,470

2. 세출

• 구미에코랜드 연간운영비 산정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인건비	정 규 직 원	145,000	147,755	150,562	153,422	156,337	753,076
	무 기 계 약	80,000	81,520	83,068	84,646	86,254	415,488
	기 간 제	300,000	350,120	356,772	363,550	370,457	1,740,899
	강 사	8,400	14,728	15,007	15,292	15,582	69,009
	소 계	533,400	594,123	605,409	616,910	628,630	2,978,472
경비	인적보험료	51,153	56,976	58,058	59,142	60,285	285,614
	시설물관리	143,358	172,011	175,279	178,609	182,002	851,259
	강좌운영비	28,160	39,695	40,449	41,217	42,000	191,521
	기본 경비	111,932	144,058	146,795	149,584	152,426	704,795
	소 계	334,603	412,740	420,581	428,552	436,713	2,033,189
계		868,003	1,006,863	1,025,990	1,045,462	1,065,343	5,011,661

□ 모노레일 연간추정 수송량 및 수지 계산(추정치)

- 1일 운행횟수 : 하절기(3월~10월) : 9시~17시, 8시간/30분 = 16회
동절기(11월~2월) : 9시~16시, 7시간/30분 = 14회
평균 : $[(16\text{회} \times 8\text{월}) + (14\text{회} \times 4\text{월})] / 12\text{월} = 15.33\text{회}$
- 주말 : 대당 1일 15.33회 운행, 1회탑승인원 8명, 6대 운영

$$15.33\text{회} \times 8\text{명} \times 6\text{대} \approx 735\text{명}$$

$$\text{○ 평일} : 735\text{명} \times 1/5 = 147\text{명}$$

$$\text{○ 연간이용객수} : 79,541\text{명}$$

$$\text{주말} \cdot \text{휴일} : 115\text{일} \times 735\text{명} \times 70\% = 59,167\text{명}$$

$$\text{평일} : 198\text{일} \times 147\text{명} \times 70\% = 20,374\text{명}$$

$$\text{○ 연간수입} : 278,393\text{천원}$$

$$79,541\text{명} \times 60\%(\text{구미시민}) \times 2,500\text{원} = 119,311\text{천원}$$

$$79,541\text{명} \times 40\%(\text{관외}) \times 5,000\text{원} = 159,082\text{천원}$$

□ 체험활동비(수강료) 수지 계산

$$\text{○ 1일 체험} : 10\text{시}, 11\text{시}, 12\text{시}, 2\text{시}, 3\text{시}, 4\text{시} = 6\text{회}$$

$$\text{○ 주말} : 6\text{회} \times 20\text{명}(1\text{회 교육인원}) = 120\text{명}$$

$$\text{○ 평일} : 120\text{명} \times 1/5 = 24\text{명}$$

$$\text{○ 연간이용객수} : 12,986\text{명}$$

$$- \text{주말} \cdot \text{휴일} : 115\text{일} \times 120\text{명} \times 70\% = 9,660\text{명}$$

$$- \text{평일} : 198\text{일} \times 24\text{명} \times 70\% = 3,326\text{명}$$

$$\text{○ 연간수입} : 36,360\text{천원}$$

$$- 12,986\text{명} \times 60\%(\text{구미시민}) \times 2,000\text{원} = 15,583\text{천원}$$

$$- 12,986\text{명} \times 40\%(\text{관외}) \times 4,000\text{원} = 20,777\text{천원}$$

소관 실·과·소		산 립 과
입 안 자	과 장	이 한 석
	담 당	윤 명 희
	담 당 자	류 한 석 (480-5887)